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신 기관의장

람

제1737호 2023. 3. 13.(월)

## 차 례

###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80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원경찰 복무규정 일부개정 규정 \_\_\_\_\_ 1

### 예 규

- 인천광역시서구 예규 제103호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_\_\_\_\_ 3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4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_\_\_\_\_ 17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38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_\_\_\_\_ 20



[별표 3]

청원경찰 보수 산정 시의 경력 환산율표(제20조의3 관련)

구 분	경 력	환산율
<p>갑 경력</p>	<p>1.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경력</p>	<p>100%</p>
<p>을 경력</p>	<p>2.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p>	<p>50%</p>



1.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또는 착용하여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포함)(이하"영상"이라 한다)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

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

다. 녹화 시야각 120° 이상

라. 녹화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

마.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2.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의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 등을 통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음성의 녹음

나. 녹음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

다. 녹음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3.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을 말하며, "음성기록"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된 음성기록물을 말한다.

4.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결합된 저장장치를 말한다.

5.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란 영상기록, 음성기록 및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있는 정보를 관리·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7. "시스템 관리자"란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권익보호)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되,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2장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등

제4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가 진정 또는 자제 요청을 하였음에도 지속하여 폭언(욕설, 헐박,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2.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협하거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 등(이하“위법행위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법행위 등을 하고 있거나, 위법행위 등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제5조(사용자 준수사항 등) ①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녹화 또는 녹음 시작과 종료 전에 녹화 또는 녹음 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 다만, 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등록할 때에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녹화 또는 녹음을 마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
3.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곳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전송 금지
4.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임의 편집·삭제 금지
5. 시스템 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제목(녹음제목), 녹화일(녹음일), 녹화내용(녹음내용)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
6.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제7조에 따른 입출고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반납

②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영상·음성의 녹화·녹음, 휴대용 보호장비의 자료 저장 상태 확인
2. 휴대용 보호장비 장애의 경우 자체진단·고장신고 및 장애기록 유지
3. 휴대용 보호장비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로 실시간 전

송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확인

#### 4. 휴대용 보호장비 및 관련 기기 운영·관리

제6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연결된 때에만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것.
2.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한 때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삭제할 것

제7조(관리책임자 및 입출고 담당자 지정) ①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책임자(정) : 사용부서 부서장
2. 관리책임자(부) : 사용부서 주무팀장

②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출고를 관리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담당공무원은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입·출고를 관리한다. 이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서 입·출고 내역을 출력하여 수기 대장을 대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부’관리책임자를 입출고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3장 기기관리 및 보안 등

제8조(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① 휴대용 보호장비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휴대용 보호장비는 사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휴대용 보호장비의 분실, 피탈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제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휴대용 보호장비 보안관리) 휴대용 보호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관리책임자만 접속

2. 무선으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시 암호화하여 전송

제10조(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소의 지정 및 운용) ①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담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고소, 고발 등(이하 ‘법적조치 등’이라 한다)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 고발 등을 위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이 필요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 한한다.

③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자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한다.

⑥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갱신하여야 한다.

⑦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음성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인의 열람 등 요구) 민원인의 영상 및 음성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4조를 준용한다.

#### 제4장 기록물 관리 및 교육

제12조(영상·음성기록 증거물 작성)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파일 또는 음성파일을 CD, DVD 등의 형태로 제작하고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 표면에 일시, 장소, 민원처리담당자 성명, 민원인 성명 등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 교육)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최초 사용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내용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사용지침,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에게 제1항의 교육내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46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3. 13.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205번길 32-8 외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3.13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3-3-13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24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205번길 32-8 (오류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124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205번길 32-11 (오류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237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205번길 32-9 (오류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24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205번길 32-6 (오류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236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205번길 32-4 (오류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238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205번길 32-7 (오류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28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205번길 32-5 (오류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219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205번길 32-3 (오류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244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205번길 32-1 (오류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49-2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42번길 20 (마전동, 해비치)	20081231	가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해비치
11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135-9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547 (연희동)	20090710	계양산과 천마산사이 정행이고개를 통과하는 도로구간으로 정행이고개의 한자표기말인 &lt;경명&gt;:방향에서 부여	
12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43-14	인천광역시 서구 발산로 17 (원당동)	20200720	옛 자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발산로라 명명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3-3-13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12 (불로동)	검단출장소-6148 (2023. 3. 2.)호에 외거	20090710	검단이'가 검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538호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 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23. 3. 13. ~ 2023. 3. 27.(15일간)

### 2.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01구1905 등 11건(붙임 참조)		
	차 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4875, FAX 032-560-2793)		

### 3. 유 의 사 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4.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4875)

##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1	01구1905	캐딜락 XT5	하나캐피탈(주)	2023.02.24
2	81버4038	포터 II (PORTER II)	정정환	2023.02.24
3	95도7124	코란도스포츠	정정환	2023.02.24
4	48거7611	e-tron 55 quattro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2023.02.24
5	70로8952	카니발	하나캐피탈(주)	2023.02.23
6	84구9702	봉고III 4륜구동	김용자	2023.02.21
7	40조3675	A6 3.0 TDI quattro	박현정	2023.02.20
8	34도8838	디스커버리 SD4	하나캐피탈(주)	2023.02.16
9	86두2253	포터 II (PORTER II)	조화금	2023.02.13
10	35마8167	ACCORD HYBRID	하나캐피탈(주)	2023.02.07
11	85서0547	포터 II 내장탑차 (PORTER II)	안혜림	2023.02.01